
대통령해외순방계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 사 결 과



강 원 도
(감 사 위 원 회)

[일련번호: 1]

강 원 도

징계·주의 요구

제 목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시

관 계 부 서 ◎◎과

징계대상자 ☆☆☆시 ◎◎과(현 공로연수, ○○사무관)

○○사무관 A

※훈계대상자 ① ☆☆☆시 ◎◎과(현 ◇◇과, ○○사무관)

○○주사 B

② ☆☆☆시 ◎◎과(현 △△면, ○○주사)

○○주사 C

징계종류 경징계

내 용

○○사무관 A는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과장으로 인사업무를 총괄 하였으며, ○○주사 B는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과 ○○담당을 하였으며, ○○주사 C는 2015. 10. 8.부터 2018. 7. 4.까지 ◎◎과 인사실무를 담당하였다.

☆☆시(◎◎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와 공로연수과건 등 인사업무를 추진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와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용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또한 인사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 이외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5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는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범위 안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9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3호 2018.5.10.)에는 공로연수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 제외하고, 또한 임용권자는 특히 공로연수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을 승진 임용 후 공로연수파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공로연수 파견 및 일반승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8. 6. 1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제1항제2호에 따라 ◎◎과장 A가 포함된 공로연수 희망자 18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8. 6. 21.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계획 심의(◎◎과장 A 포함)와 지방공무원 일반승진 심의(◎◎과장 A 포함)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인사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2018. 6. 25. ☆☆시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권자인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계획(의결번호 2018-**호), 지방공무원 승진(의결번호 2018-**호)등 심의안건 순서에 따라 심의·의결 하였으며, ◎◎과장 ○○사무관 A는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서기관으로 승진임용 발령을 통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규정된 공로연수과건자는 승진 임용을 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장 A를 위법·부당하게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2018. 7. 2. ○○투데이에서 “공로연수 예정자 승진 논란 ☆☆시, 6일짜리 서기관 승진인사로 뒷말 무성”과 ☆☆방송국 뉴스7에서 “4급 승진 후 엿새 만에 공로연수...☆☆시 인사논란”이라는 보도를 통하여 ☆☆시의 부당한 인사를 비난하였다.

2018. 7. 9. ☆☆시(◎◎과)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위반을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행정의 공정성과 주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사유로, 전 ◎◎과장 A에 대한 ○○서기관 승진임용을 직권 취소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 불신과 대외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8. 7. 16. ☆☆시 의회 본회의에서 D의원은 ☆☆시 인사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승진인사를 단행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인사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어 기관의 위상 및 명예를 훼손시켰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A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B, C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공로연수과건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위반하여 승진임용 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 부과 소홀

기 관 명 ◁ ◁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 군(♡♡과)에서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군 군세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 ◁ 군(♡♡과)에서는 “재산세(토지분) 착오 부과 현황”과 같이 ◁ ◁ 군 ♡♡면 ○○리 산81번지 토지에 대하여 2005년 경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수정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소유자가 아닌 E에게 재산세(토지

분) ***,***원을 착오로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발생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조치할 사항 ◁ ◁ 군수는

[시정] 착오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주의] 앞으로 재산세 부과 시 착오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실시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